

개정 「자원봉사 기본법」 해설서

*** 일러두기**

본 자료는 제22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2026년 4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의 주요 내용을 현장에서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해설자료입니다.

따라서 실제 행정 집행이나 기관 운영의 직접적인 근거로 활용될 수 없으며, 입법기관 또는 정부의 공식적인 유권해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법률의 시행 과정에서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의 제정·개정 및 관계 기관의 해석에 따라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들어가며

1) 자원봉사활동 기본법¹⁾ 제정의 배경

- 1990년대 전국적인 자원봉사운동의 전개와 자원봉사의 사회적 역할이 증대됨
- 이에 따라 체계적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정책적 논의를 바탕으로 2005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제정됨
- 2005년 제정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은 자원봉사 진흥을 위한 전사회적 노력의 활성화와 정책적 지원의 체계화에 기여함

2)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개정의 요구들

- 법제정 당시 예상치 못한 개선 요청이나 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른 법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이에 따라 제2차, 제3차에 이어 현행 제4차 자원봉사진흥 국가기본계획(2023~2027)에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개정이 추진과제로 명시됨
- 아울러 2024년 국회의원 선거 시기에는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한국자원봉사학회가 자원봉사계의 의견을 수렴해 기본법 개정을 비롯한 정책제안을 담은 '정당에 바란다'를 발표한 바 있음

3)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개정의 흐름

- 2009년부터 현재(2026년 1월)까지 국회에 50여건의 법개정안이 발의되었고, 8번의 개정이 이뤄짐

1) 이번 개정에 따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의 법제명이 「자원봉사기본법」으로 변경되었음. 다만,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 개정 경과 등 일부 배경 설명에 한하여 종전 법제명인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을 병기하여 사용함.

- 대부분의 개정은 법 기술적인 사항에 관한 것이고, 유의미한 개정은 2016년 '자원봉사활동의 강요 금지' 조항 신설(제5조의 2)로 충분한 개선에 이르지 못한 상황임
- 2024년 행정안전부가 추진하고 한국자원봉사학회가 수행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연구'를 통해 자원봉사계의 주요한 법개정 요구가 수렴됨
 - 2024년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주도하고 한국자원봉사협의회,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한국자원봉사학회, 한국자원봉사포럼, 충청권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가운데 기본법 개정안 마련을 위해 민관합동 TF를 운영함
 - 2025년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와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그리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 지역구의 지역 자원봉사센터들을 중심으로 자원봉사기본법개정TF를 새롭게 구성해 기본법 개정안의 국회 의원발의를 추진함
 - 2025년 12월, 신정훈 의원, 이성권 의원 등 33명의 국회의원에 의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개정법률안'이 공동 발의됨
 - 2026년 3월, 성일종·박성훈·이성권·신정훈·이달희 의원 등이 발의한 5개 법률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3.31)를 통과하여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으로 통합·마련함
 - 2026년 4월, 국회·정부·민간 합의를 바탕으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4.6) 및 법제사법위원회(4.22)를 거쳐, 국회 본회의(4.23) 의결로 법 개정이 최종 확정됨

2. 개정의 큰 방향

1) 개정 추진배경

■ 20년 넘게 사실상 개정되지 않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2005년 제정 당시 기본적인 자원봉사활동 지원체계 구축과 자원봉사의 정치적 중립 확보 등 규제에 중점을 둔 초기 입법취지가 많은 부분 실현되면서 법제도의 한 단계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자원봉사를 둘러싼 변화된 사회적 환경에 조응

그간 자원봉사자들의 인식과 문화, 그리고 자원봉사의 사회적 위상 변화에 따라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제도 개선도 이뤄지는 것이 순리임

■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정책 고도화의 과제

법 제정 이후 20여 년간 4차례의 국가기본계획이 추진되어 왔으며, 2027년 제5차 기본계획 수립을 앞둔 현 시점에서 자원봉사 정책의 질적 고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정비가 요구됨

2026년 전 세계적으로 추진되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26 세계 자원봉사자의 해'에서도 자원봉사 정책의 향상이 주요 의제로 설정되어 이에 부합하는 정책 발전 방향의 마련이 필요함

2) 개정의 지향: 4가지 가치

■ 자원봉사의 공공성

자원봉사를 민간의 자율적 활동에 대한 지원이라는 소극적 의미를 넘어, 개인의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가는 모두의 사회 시스템으로 재정립함

■ 자원봉사자에 대한 포용과 책임

자원봉사의 범위에 온라인 활동을 포함하여 자원봉사자의 다양한 실천방식을 포용하고, 자원봉사자의 인권 보호를 제도적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참여 환경을 조성함

■ 자원봉사 관리자의 위상과 전문성

정책과 실천 현장에서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정책을 추진하는 자원봉사 관리자의 사회적 역할을 제고하고 전문성 향상을 도모함

■ 지원체계의 자율성과 실효성

자원봉사센터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정보 기반으로 자원봉사관리시스템(1365 자원봉사포털) 운영의 체계성과 실효성 강화를 추진함

3) 개정의 내용: 4가지 영역

- 이번 자원봉사기본법 개정에서는 법제명과 자원봉사, 자원봉사자, 자원봉사 관리자, 지원체계 등 4가지 영역에 걸친 주요 개정 내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영역	개정조항	개정내용
자원봉사 (법 전반)	법제명 및 제1조 등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 자원봉사기본법 '자원봉사활동' 표현 → '자원봉사'로 통일
	제2조(기본 방향)	자원봉사 주체 '국민' → '개인'으로 변경 인종 항목 차별 금지 사유에 추가
자원봉사자	제8조(자원봉사의 범위)	기존 1~15호 자원봉사 범위에 추가하여 온라인(정보통신망) 자원봉사 포함 명시(②항 신설)
	제16조(자원봉사자의 보호)	자원봉사자 인권침해 예방·차별 금지·인권 옹호의 책임 명시 (③항 신설)
자원봉사 관리자	제17조(자원봉사의 촉진 및 관리)	자원봉사 관리 업무 내용 명확화
	제18조(자원봉사 관리자 양성 등)	자원봉사 관리자 양성 근거 (신설)

영역	개정조항	개정내용
지원체계	제10조(지역자원봉사진흥위원회)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자원봉사진흥위원회 설치 근거 (신설)
	제11조(자원봉사진흥에 관한 국가기본계획의 수립)	자원봉사진흥 국가기본계획 수립 시 시·도지사와 협의
	제22조(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국가·지자체의 자원봉사센터 직접 운영 폐지 국가의 자원봉사센터 경비 지원 명시
	제23조(자원봉사센터의 명칭)	자원봉사센터 고유 명칭화(신설)
	제24조(기부금품의 접수)	자원봉사센터 기부금품 접수 허용 근거 (신설)
	제25조(자원봉사관리시스템)	자원봉사관리시스템 구축·운영·위탁 근거 및 자료 요청 권한 명시 (신설)
	제26조(자원봉사현황 통계)	자원봉사현황 통계 작성·제공 근거 명시 (신설)

3. 주요 개정 내용

개정내용 ①

자원봉사의 공공성

(자원봉사 영역)



1) 개정 법조항

- 법제명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서 '자원봉사기본법'으로 변경
- 법안 본문의 '자원봉사활동' 표현을 '자원봉사'로 통일
- 자원봉사의 주체가 '국민'에서 '개인'으로 변경(제2조), 차별 금지 사유에 '인종' 추가

기존 법안	개정 법안	개정내용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자원봉사기본법	법제명 변경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봉사를 진흥하고 행복한 공동체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원봉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봉사를 진흥하고 행복한 공동체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원봉사활동 → 자원봉사
제2조 (기본방향) (생략) 1. 자원봉사활동은 국민의 협동적인 참여 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2. (생략) 3. 모든 국민은 나이, 성별, 장애, 지역, 학력 등 사회적 배경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생략)	제2조 (기본방향) (현행과 같음) 1. 자원봉사는 <u>개인</u> 의 협동적인 참여 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2. (현행과 같음) 3. 모든 <u>개인</u> 은 나이, 성별, 장애, 지역, 학력, <u>인종</u> 등 사회적 배경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현행과 같음)	국민 → 개인 차별 금지 사유에 '인종' 추가

2) 개정의 이유

■ 자원봉사 전반을 규정하는 기본법으로서의 성격 명확화

단순한 참여 장려를 넘어 자원봉사의 가치와 정책·실천 전반을 규정하는 '자원봉사의 헌법'으로서의 성격을 천명함

자원봉사를 개인의 선행을 넘어 사회 발전을 위한 필수적 사회 시스템으로 보고, 이를 국가의 책무로서 발전시켜야 한다는 인식 전환을 반영함

■ 자원봉사가 지닌 보편성 강조와 대상 확대

국가의 구성원이자 보호대상으로서의 '국민' 중심 인식에서 나아가, 스스로의 삶과 가치에 기반하여 사회에 참여하는 주체로서의 '개인'이라는 포괄적 개념을 채택함

또한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에 한정되지 않고 우리 사회를 구성하며 함께 살아가는 다양한 주체들의 자원봉사 참여를 기본법 체계 안에서 포괄하도록 함

3) 개정의 영향과 전망

■ 자원봉사는 국가와 사회가 함께 가꿔나갈 사회 시스템이며, 자원봉사는 모두가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을 담고 있음

■ 자원봉사의 주체로서 '개인'의 개념 정립과 이에 대한 유관 부처와의 협의 및 사회적 인식 제고가 필요함

■ '자원봉사활동'이 '자원봉사'로 통일됨에 따라 관련 조례, 지침, 서식 등 하위 법령과 행정문서의 정비 필요함

개정내용 ②

자원봉사자에 대한 포용과 책임 (자원봉사자 영역)



1) 개정 법조항

- 자원봉사의 범위에 온라인 자원봉사 포함 명시(제8조 ②항 신설)
-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권 옹호 책임 강화(제16조 ③항 신설)

기존 법안	개정 법안	개정내용
<p>제7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 개발·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 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 옹호 및 평화 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 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질서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 관리 및 재해 구호에 관한 활동 	<p>제8조(자원봉사의 범위) 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15호 현행 유지)</p> <p>② 제1항의 자원봉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p>	<p>자원봉사 범위에 온라인 자원봉사 포함 명시 (신설)</p>
<p>제14조(자원봉사자의 보호) ① ~ ② (생략)</p>	<p>제16조(자원봉사자의 보호) ①~② 현행 유지</p> <p>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자 등에 대하여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차별을 금지하며, 인권을 옹호할 책임을 진다.</p>	<p>자원봉사자 인권옹호의 책임 (신설)</p>

2) 개정의 이유

■ 다양한 자원봉사를 포용할 수 있는 법제도

비대면 상담·멘토링, 원격교육, 콘텐츠 제작, SNS 캠페인 등 온라인 또는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을 통한 자원봉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 명시적 근거가 없어 정책적 고려대상에서 벗어나는 상황이 발생해 왔음

기존 1~15호 열거 방식을 유지하면서 제2항을 신설해 온라인 자원봉사를 명시적으로 포함함으로써 디지털 전환 시대에 부합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함

■ 자원봉사자 인권 옹호의 공공 책임 신설

기존 법에서는 자원봉사자의 기본적인 안전 보호와 보험제도에 관한 규정만 있었으나, 개정을 통해 자원봉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및 차별 문제에 대한 공공의 적극적 책임을 명문화함

이를 통해 자원봉사 현장에서 사고 예방 중심의 소극적 보호를 넘어 자원봉사자의 존엄과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보다 안정적인 현장 여건을 조성함

3) 개정의 영향과 전망

■ 자원봉사자와 관련한 법개정안의 취지는 모든 유형의 자원봉사를 포용하는 법제도,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자원봉사 현장으로 요약할 수 있음

■ 온라인 자원봉사의 법적 근거 마련으로 비대면·디지털 자원봉사 활동이 공식 정책 지원 대상에 포함됨. 이에 따라 시행령, 지침 등의 반영과 1365 자원봉사 포털 등 분류체계 개선 등이 요청됨

■ 또한 자원봉사자의 인권 옹호 조항 신설에 따라 자원봉사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안전·인권 교육 강화와 교육 내용 개편이 필요함. 나아가 자원봉사자 손해 지원·보상 및 과실 면책 조항은 추후 시행령 정비나 후속 입법 과정에서 자원봉사계의 지속적인 정책 활동이 요구됨

개정내용 ③

자원봉사 관리자의 위상과 전문성 (자원봉사 관리자 영역)



1) 개정 법조항

- 자원봉사 관리 업무 내용 명확화(제17조)
- 자원봉사 관리자 양성에 관한 사항 명시(제18조 신설)

기존 법안	개정 법안	개정내용
제15조(자원봉사활동의 관리)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안전대책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자원봉사의 촉진 및 관리)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는 지역 사회와 자원봉사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교육 훈련 및 위험 예방, 인정과 홍보, 재난 자원봉사 등 자원봉사의 촉진 및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자원봉사 관리 업무 내용 명확화
(신설)	제18조(자원봉사 관리자 양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 관리자를 양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 관리자의 자격과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 관리자 양성의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 관리자 양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자원봉사 관리자 양성에 관한 사항 명시 (신설)

2) 개정의 이유

■ 자원봉사 관리 업무의 구체적 규정과 변화된 업무내용 반영

- 전국적으로 자원봉사 관리자가 하나의 직업군으로 안착되었으나, 국가표준직업분류 체계 등 제도적 위상과 업무의 전문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한 상황임
- 최근 행정안전부와 자원봉사계의 공동 노력으로 자원봉사관리의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이 개발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업무 내용과 범위의 명확화가 필요함
- 기본법 제정 당시와 비교하여 자원봉사 관리자의 역할과 업무 수준에 많은 변화가 요구되고 있어 이를 반영한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임

■ 자원봉사 관리자의 체계적 양성 기반 마련

- 자원봉사 관리자는 주로 민간 영역에서 전문성을 축적한 인력으로 충원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를 위한 체계적인 양성 기반은 충분히 마련되지 못한 상황임
-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정책·사업 추진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자원봉사 관리자를 공공이 양성해야 할 책임과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의 필요성을 명시함
- 자원봉사 관리자의 안정적인 양성을 통해 자원봉사 관리 업무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관련 정책 및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함
- 향후 자원봉사 관리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며, 이는 자원봉사센터의 민간주도 운영으로의 전환과 직접적 연관성을 가짐

3) 개정의 영향과 전망

- 자원봉사 관리자와 관련한 개정안은 자원봉사 정책과 실천에 있어 자원봉사 관리자의 제도적 위상을 확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문성과 자긍심을 형성하는 것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를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오랜 시간 현장에서 자원봉사 진흥 업무를 담당해온 자원봉사 관리자의 법적 지위를 최초로 명시함으로써 자원봉사 관리자의 제도적 위상 확립의 첫 발판이 마련됨
- 자원봉사 관리자의 자격과 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만큼, 하위 법령과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 개정은 현장의 상황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함
- 이와 관련해 사회복지사(사회복지사업법), 청소년지도사(청소년활동진흥법), 평생교육사(평생교육법) 등의 사례를 참조할 수 있음

- 자원봉사계에서는 제도적 위상을 넘어 전문성과 사회적 가치에 기반해 자원봉사 관리자의 직업적 정체성 형성을 위한 다양한 단위의 논의와 전국적 홍보가 필요함

개정내용 ④

지원체계의 자율성과 효율성 (지원체계 영역)



1) 개정 법조항

-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자원봉사진흥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제10조 신설)
- 자원봉사진흥 국가기본계획 수립 시 시·도지사와 협의(제11조)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자원봉사센터 직영 불가(제22조 ②항 삭제)
- 국가의 자원봉사센터 경비 지원 명시(제22조)
- 자원봉사센터의 고유 명칭화(제23조 신설)
- 자원봉사센터의 기부금품 접수 근거(제24조 신설)
- 자원봉사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및 자료 요청 권한(제25조 신설)
- 자원봉사 현황 통계 작성·제공 근거(제26조 신설)

기존 법안	개정 법안	개정내용
(신설)	<p>제10조 (지역자원봉사진흥위원회)</p> <p>①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의 자원봉사 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지역자원봉사진흥위원회 (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위원회의 성격 및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역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p> <p>② 지역위원회는 자원봉사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p> <p>③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p>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자원봉사진흥위원회 설치 근거 (신설)

기존 법안	개정 법안	개정내용
<p>제9조 (자원봉사진흥에 관한 국가기본계획의 수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국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p>	<p>제11조 (자원봉사진흥에 관한 국가기본계획의 수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u>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u>와 <u>협의</u>하여 자원봉사의 진흥을 위한 국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p>	<p>자원봉사진흥 국가기본계획 수립 시 시·도지사와 협의</p>
<p>제19조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생략)</p>	<p>제22조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 ① (현행유지)</p>	
<p>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할 수 있다.</p>	<p>② (삭제) (기존③→②로 변경)</p>	<p>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자원봉사센터 직접 운영 폐지</p>
<p>③ 국가는 자원봉사센터의 설치·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p>	<p>② 국가는 자원봉사센터의 설치·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u>국가와</u>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p>	<p>국가의 자원봉사센터 경비 지원 명시</p>
<p>④ (생략)</p>	<p>③ <u>현행유지</u> (기존④→③로 변경)</p>	
<p>(신설)</p>	<p>제23조 (자원봉사센터의 명칭) ① 전국 단위 자원봉사센터는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의 명칭을, 지역 단위 자원봉사센터는 해당 지역명을 붙인 자원봉사센터의 명칭을 각각 사용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른 지역 단위 자원봉사센터가 아닌 자는 지역명을 붙인 자원봉사센터와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자원봉사센터 고유 명칭화 (신설)</p>

기존 법안	개정 법안	개정내용
(신설)	<p>제24조 (기부금품의 접수)</p> <p>① 자원봉사센터는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 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p> <p>② 자원봉사센터는 제1항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p> <p>③ 기부금품의 접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자원봉사센터 기부금품 접수 허용 근거 (신설)</p>
(신설)	<p>제25조(자원봉사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p> <p>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원봉사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자원봉사를 진흥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시스템 (이하 "자원봉사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p> <p>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원봉사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자원봉사관리시스템과 관련 기관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 관련 전자정보시스템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원봉사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p>④ 자원봉사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자원봉사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 (신설)</p>
(신설)	<p>제26조 (자원봉사현황 통계)</p> <p>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을 위하여 자원봉사현황 통계를 작성·제공할 수 있다.</p> <p>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원봉사현황 통계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현황 통계 작성의 내용과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자원봉사현황 통계 작성·제공 근거 명시 (신설)</p>

2) 개정의 이유

■ 지역 단위 자원봉사 정책 거버넌스의 제도화

국가 단위 자원봉사진흥위원회와 달리 지역 단위에서는 자원봉사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기구의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자원봉사진흥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책 추진 체계를 보완하고 지역 자원봉사 정책의 자율성과 민주성을 높일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함

또한 자원봉사진흥 국가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명시함으로써 중앙 정부 중심의 계획 수립 구조를 개선하고, 지방정부의 의견을 반영한 협력적 정책 수립 체계를 강화함. 이를 통해 국가 정책과 지역 정책 간 연계성과 실행력을 제고함

■ 지원조직으로서 자원봉사센터의 공공성과 자율성 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기반해 설치된 자원봉사센터를 자원봉사 진흥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자원봉사 지원조직의 고유명칭으로 규정하여 공공성과 고유성을 강화하고, 기관의 정체성 확립과 대외 신뢰도 제고를 도모함

자원봉사센터는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정치적 환경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자원봉사 진흥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의 유연성과 현장 기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 운영과 사업에 있어 충분한 자율성 확보가 필요함

특히 지방자치단체 직영 형태로 운영되는 자원봉사센터의 경우 자율성과 민간주도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민간위탁 중심의 자원봉사센터 운영 원칙을 천명함으로써 자율성과 민간주도성 확보의 기반을 마련함

이를 통해 자원봉사가 지역 단위의 자원봉사 진흥 정책 추진에 있어 공공 인프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 돋보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원봉사센터 직접 운영 불가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원봉사센터 직접 운영을 제한하는 개정안은, 그간 현장에서 나타난 지방자치단체와 자원봉사센터 간 비민주적 관계와 정치적 환경 변화에 따른 운영 불안정성 등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 할 수 있음.
- 이 사안의 핵심은 운영방식 그 자체에 있기보다 지방자치단체와 자원봉사센터 간 수평적·민주적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운영 자율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있음. 그간의 현장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직영 방식은 민주성과 자율성 확보 측면에서 한계를 보여온 방식으로 평가되며, 지양할 필요가 있음.

- 운영방식의 제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약한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민주성과 자율성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견지해야 할 기본적인 행정 원리로서 법령을 통해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가능함.
-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은 단순한 운영방식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중앙정부의 권한과 자원을 지역으로 분산하고 지역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분권과 자치를 통해 실질적으로 구현되는 것임.

■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자원 마련의 근거 명확화

기존 기본법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지원만 규정하고 있었음.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의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과 지역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지원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법적 공백을 해소하고 안정적 운영 기반을 확보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운영체계를 마련함

특히 재난 상황 등에서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이루어지는 기부·모금 활동의 필요성을 반영하여 관련 활동의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자원 확보의 자율성을 확대함과 동시에 투명하고 책임 있는 관리를 위해 별도 계정 운영을 의무화함

🔍 돋보기: 자원봉사센터의 기부금품 모집

- 자원봉사센터의 모금이 민간단체들의 모금 활동과 경쟁관계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하지만, 자원봉사센터의 기능이 직접사업 보다는 민간단체와 자원봉사자 등 민간주체들의 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지원하는 것임을 감안하면 상호 보완관계로 이해할 수 있음
- 재난 시기를 중심으로 이미 오랜 시간 자원봉사센터를 통한 기부와 이를 활용한 구호 및 자원봉사 활동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것을 현행화 한 조치라 할 수 있음
 - 최근 고향사랑기부제 등 공공기관이 특수한 사회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모금주체가 되는 경우가 확대되고 있기도 함

■ 자원봉사관리시스템 및 현황 통계의 법적 기반 마련

자원봉사 진흥 정책의 추진과 정책 수립의 근거가 되는 기초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 아울러 시스템 운영의 책임 주체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명확히 하고, 관련 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및 시스템 연계 요청 권한을 규정함으로써 분산된 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또한 1365 자원봉사포털 기반의 자원봉사 현황이 국가통계로 승인됨(2026.01)에 따라, 자원봉사현황 통계의 작성·제공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관계 기관의 협조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통계의 신뢰성과 활용도를 제고함

이를 통해 자원봉사 정책의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체계를 강화하고, 자원봉사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보함

🔗 돋보기: 자원봉사관리시스템과 국가승인통계의 연계

- 자원봉사관리시스템의 기초를 이루는 것은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가 지속적으로 수집되는 것임
- 2026년 1월 1365 자원봉사포털에서 수집되는 자원봉사 현황이 국가통계로 승인됨에 따라 정부 부처별로 관리되는 자원봉사 관련 현황과의 취합이나, 현재 행정안전부가 3년마다 실시하는 실태조사 등을 체계화 하고 법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3) 개정의 영향과 전망

- 지역자원봉사진흥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으로 지역 단위 자원봉사 정책의 민주성·전문성 향상 기반이 마련됨. 각 지자체에서 조례 제정 등 실질적인 위원회 운영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자원봉사센터는 민간위탁 중심 운영 원칙과 명칭의 고유화를 통해 공공성과 자율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정립됨. 현재 직영으로 운영 중인 자원봉사센터는 3년 이내에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위탁 방식으로 전환이 요구됨. 다만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방식 개선과 인식의 전환, 지역 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단계적 추진 등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
- 재원 측면에서는 국가 지원 근거와 기부금품 접수 허용으로 다양한 재원 확보 기반이 확대됨. 이에 따라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체계 정비가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며 기부금 운영에 관한 세부 지침 마련이 필요함

- 자원봉사관리시스템 구축·운영·위탁의 근거 마련 및 현황 통계 법제화로 자원 봉사 데이터 관리와 정책 수립의 체계성이 강화됨. 향후 데이터 연계, 품질 관리,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 관련 제도 마련 및 기관 간 데이터 연계 체계 구축이 병행되어야 정책 활용도가 제고될 것으로 보임

4. 나가며

1) 논의의 갈무리

- 이 해설서는 2026년 4월 제22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전부법률개정안)」과 관련하여 자원봉사계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주요 내용을 해설하기 위해 작성됨

본 해설서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쉽게 설명하는 동영상 자료와 함께 활용되는 것을 고려하여, 상호 보완적으로 이해를 돕는 자료로 구성함

이에 따라 쉬운 설명 중심의 해설보다는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간명하게 정리한 '핵심 정리문(Fact Sheet)' 형식을 기반으로 이해를 돕는 해설을 제시함

- 우리 사회 자원봉사 정책과 실천의 제도적 기반을 형성하는 자원봉사기본법의 개정내용이 지향하는 주제를 다시 한번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사회 시스템으로서 자원봉사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기본법'

다양성의 존중, 공공의 책임 속에 안전하게 활동하는 '자원봉사자'

자원봉사 진흥에 전문성을 갖추고 사회적으로 인정 받는 '자원봉사 관리자'

운영의 자율성, 자원 마련의 실효성을 갖춘 '자원봉사센터',

통합성과 체계성을 갖추고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자원봉사관리시스템'

2) 20년만의 제도 변화, 자원봉사 생태계의 재도약을 향해!

“영향력이 큰 단체들은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지 않는다. 처음에는 훌륭한 프로그램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지만, 마침내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만으로 근본적인 변화를 불러올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따라서 그들은 관련 정책 발의나 지지 활동을 추가로 한다. 정부 지원을 받거나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따라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간다 ... 그리고 그 두 가지를 모두 잘 수행한다. 자신의 주장을 더 널리 알리고 사업 수행을 잘 하면 잘 할 수록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은 점점 더 커진다”

레슬리 R. 크러치필드, 헤드 M.그랜트. 김병순 역. 2010. 선을 위한 힘:
성공한 사회적기업과 비영리단체의 6가지 습관 中

- 우리 사회 자원봉사가 지금의 모습으로 발전해 온 것은 자원봉사계의 다양한 주체들이 현장에서 쌓아 온 고민과 노력의 결과임. 이번 전부개정은 법 제정 이후 20년 만에 이루어진 변화로, 자원봉사를 둘러싼 정책 환경과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새로운 출발점이자 제도적 전환의 계기가 됨. 이를 통해 자원봉사는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사회 시스템으로 자리매김할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음
- 그러나 현장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제도적 과제 역시 여전히 존재함. 자원봉사자의 권리 보호, 관리자의 전문성 강화, 데이터 통합과 정책 연계, 지역 단위 거버넌스의 실질화 등은 자원봉사계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풀어가야 할 과제임. 이러한 과제는 개별 조직의 대응을 넘어, 공동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한 정책적 대응과 지속적인 공론화를 통해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전 세계적으로 자원봉사의 실천을 다시 활성화하기 위한 흐름 속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26 세계 자원봉사자의 해'는 자원봉사계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임.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자원봉사 인프라를 지속가능한 정책·운영 체계로 전환하고, 제도와 현장이 선순환하는 기반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임. 이를 위해 자원봉사계가 공동의 방향 아래 힘을 모으고, 사회 전반으로 자원봉사의 가치와 의미를 확산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함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자원봉사기본법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자원봉사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원봉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봉사를 진흥하고 행복한 공동체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 방향) 자원봉사의 진흥을 위한 정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본 방향으로 하여야 한다.

1. 자원봉사는 개인의 협동적인 참여 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2. 자원봉사는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非政派性), 비종파성(非宗派性)의 원칙 아래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모든 개인은 나이, 성별, 장애, 지역, 학력, 인종 등 사회적 배경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자원봉사의 진흥을 위한 정책은 민·관 협력의 기본 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원봉사”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 재능, 기술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란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란 자원봉사를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자원봉사센터”란 자원봉사의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된 기관·법인·단체 등을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개인의 자원봉사를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정치활동 등의 금지 의무) ① 제16조,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지원을 받는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서 “선거운동”이란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말한다.

제6조(자원봉사의 강요 금지) 누구든지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원봉사를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자원봉사의 진흥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자원봉사의 범위) 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 개발·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 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 옹호 및 평화 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 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질서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 관리 및 재해 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 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 방지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국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 분야의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② 제1항의 자원봉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

제9조(자원봉사진흥위원회) ① 자원봉사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관계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자원봉사진흥위원회를 둔다.

② 자원봉사진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원봉사의 진흥을 위한 정책 방향의 설정 및 협력·조정
2. 자원봉사의 진흥을 위한 국가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 자원봉사의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원봉사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심의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의 협의 사항을 정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진흥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자원봉사진흥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지역자원봉사진흥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의 자원봉사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지역자원봉사진흥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역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지역위원회는 자원봉사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1조(자원봉사 진흥에 관한 국가기본계획의 수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와의 협의하여 자원봉사의 진흥을 위한 국가기본계획(이하 “기본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원봉사의 진흥에 관한 기본 방향
2. 자원봉사의 진흥에 관한 추진 일정
3.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의 자원봉사에 관한 추진 시책
4. 자원봉사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財源)의 조달 방법
5. 그 밖에 자원봉사의 진흥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제12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3조(학교·직장 등의 자원봉사 장려) ① 학교는 학생의 자원봉사를 권장하고 지도·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② 직장은 직장인의 자원봉사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③ 학교·직장 등의 장은 학생 및 직장인 등의 자원봉사에 대하여 그 공헌을 인정하여 줄 수 있다.

제14조(포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를 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센터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① 국가는 개인의 자원봉사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한다.

②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의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자원봉사자의 보호)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가 안전한 환

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자원봉사자의 보험 가입 등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호의 종류와 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자 등에 대하여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차별을 금지하며, 인권을 옹호할 책임을 진다.

제17조(자원봉사의 촉진 및 관리)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는 지역사회와 자원봉사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교육 훈련 및 위험 예방, 인정과 홍보, 재난 자원봉사 등 자원봉사의 촉진 및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자원봉사 관리자 양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 관리자를 양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 관리자의 자격과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 관리자 양성의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 관리자 양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국유·공유재산의 사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의 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유·공유재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한국자원봉사협의회) ① 자원봉사단체는 전국 단위의 자원봉사를 진흥·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기 위하여 한국자원봉사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1. 회원단체 간의 협력 및 사업 지원
2. 자원봉사의 진흥을 위한 홍보 및 국제교류

3. 자원봉사와 관련된 정책의 개발 및 조사·연구
4. 자원봉사와 관련된 정책의 건의
5. 자원봉사와 관련된 정보의 연계 및 지원
6. 그 밖에 자원봉사의 진흥과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②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 ③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등기함으로써 설립된다.
 - ④ 한국자원봉사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자원봉사센터의 설치·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자원봉사센터의 장의 자격요건과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자원봉사센터의 명칭) ① 전국 단위 자원봉사센터는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의 명칭을, 지역 단위 자원봉사센터는 해당 지역명을 붙인 자원봉사센터의 명칭을 각각 사용하여야 한다.

- ② 이 법에 따른 지역 단위 자원봉사센터가 아닌 자는 지역명을 붙인 자원봉사센터와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기부금품의 접수) ① 자원봉사센터는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센터는 제1항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부금품의 접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자원봉사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원봉사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자원봉사를 진흥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시스템(이하 “자원봉사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원봉사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자원봉사관리시스템과 관련 기관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 관련 전자정보시스템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원봉사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자원봉사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자원봉사현황 통계)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을 위하여 자원봉사현황 통계를 작성·제공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원봉사현황 통계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현황 통계 작성의 내용과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벌칙)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가 제5조에 따른 정치활동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255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벌칙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단법인 한국자원봉사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제20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원봉사협의회로 본다.

제3조(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원봉사센터는 제2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해당 자원봉사센터는 이 법 시행 이후 3년 이내에 제22조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나목 중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을 “자원봉사기본법”으로 한다.